

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-113호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23일

산업통상부장관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9항 중 “2026년 4월부터 6월까지”를 “2026년 4월부터 6월까지,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”로 한다.

제21조제10항 중 “2026년 4월부터 6월까지”를 “2026년 4월부터 6월까지,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”로 한다.

제22조제6호 단서 중 “2026년 4월부터 6월까지”를 “2026년 4월부터 6월까지,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”로 한다.

제24조의3제3항 단서 중 “우선하여 적용한다”를 “우선하여 적용하며,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도입되는 다변화원유에 대해서는 아래 유조선

운임지수(World Scale) 산출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우선하여 적용하되, 평균 국제용선율($\bar{z}$, $\bar{n}$)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변화 원유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9항 및 제10항, 제22조제6호, 제2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통관(비상시 물량교환 목적으로 비축유를 대여받은 후 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을 통관일로 본다)되는 원유 수입분에 대해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부과금의 환급대상) ① ~ ⑧ (생 략) ⑨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국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산유국 정부, 국영석유회사,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원유(이하 “다변화 원유”라 한다)에 한한다. 단, 법 제16조제2항 및 한국석유공사 「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비상시 물량교환 목적으로 비축유를 대여받은 후 <u>2026년 4월부터 6월까지</u> 다변화원유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다변화원유로 본다. 1. ~ 4. (생 략)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, <u>2026년 4월부터 6월까지</u> 도입되는 다변화원유에 대해서는 제9항제2호	제21조(부과금의 환급대상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⑨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은 국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산유국 정부, 국영석유회사, 석유메이저 또는 트레이딩회사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원유(이하 “다변화 원유”라 한다)에 한한다. 단, 법 제16조제2항 및 한국석유공사 「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비상시 물량교환 목적으로 비축유를 대여받은 후 <u>2026년 4월부터 6월까지</u>, <u>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</u> 다변화원유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다변화원유로 본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⑩ ----- <u>2026년 4월부터 6월까지</u>, <u>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</u> -----

나목,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⑪ (생략)

제22조(부과금 환급신청자)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제21조제9항의 경우에는 다변화원유를 도입한 자. 단, 법 제16조제2항 및 한국석유공사 「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」 제12조 및 제12의2에 따른 비상시 물량교환 목적으로 비축유를 대여받은 후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다변화원유로 상환하는 자는 다변화원유를 도입한 자로 본다.

7. (생략)

제24조의3(환급대상 다변화원유량의 산정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다변화원유에 대한 환급액이 아래 유조선운임지수(World Scale)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 아래 유조선운임지수(Wor

-----.

⑪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부과금 환급신청자) 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-----.

-----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,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-----
-----.

7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3(환급대상 다변화원유량의 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ld Scale) 산출기준에 따른 환급 액을 적용한다. 단, 2026년 4월 부터 6월까지 도입되는 다변화 원유에 대해서는 아래 유조선운 임지수(World Scale) 산출기준 에 따른 환급액을 <u>우선하여 적 용한다.</u>	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우선하여 적용 하며,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도입되는 다변화원유에 대해서 는 아래 유조선 운임지수(Worl d Scale) 산출기준에 따른 환급 액을 우선하여 적용하되, 평균 국제용선율(ζ, n)은 적용하지 아 니한다.
--	---